

"흡족하다 남비알고 접수하는 알뜰시민"

서울특별시

우120-030 서울.서대문.합.27-1 / 전화 (02)3907-380. / 전송(FAX) 313-4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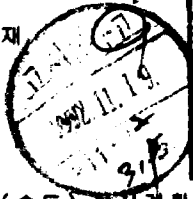
문서번호 수시실 30342 - 1273

시행일자 '92. 11. 19

(제1안)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취급		사 장
보존	3년	법무담당관 심사필
본부장	전결	
국장	신씨	
부장	조	
기안	조공	

1992.11.19	1992.11.19	1992.11.19	1992.11.19
1992.11.19	1992.11.19	1992.11.19	1992.11.19

제목 도시계획 사업(수도)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5호('92. 3.19)로 도시계획(수도) 시설 결정 및 동 고시 제9호('92. 4. 3)로, 지적 승인된 동작구 대방동 350-5 일대 수도용지에 시행 예정인 대방배수지 건설 공사의 도시계획 사업(수도)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안과 같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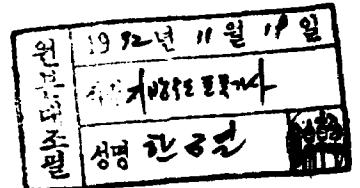
- 첨부 : 1. 공고안 1부.
 2. 위치도 및 지적현황도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제2안)

수신 : 공 보 관

제목 : 시보게재 및 신문공고 의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5호('92. 3.19)로 도시계획(수도) 시설 결정 및 동 고시 제9호('92. 4. 3)로, 지적 승인된 동작구 대방동 350-5 일대 수도용지에 대방 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수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별첨 공고문 내용과 같이 시보 게재 및 신문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1) 시보게재 : 공 고

2) 일간 신문광고 : 2개사 (3단 : 3 × 8)

나. 광고일시 : 1992. 11.

첨부 : 1. 공고문 1부.

2. 물건조서 4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제3안)

수신 동작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장

제목 같은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5호('92. 3.19)로 도시계획(수도) 시설 결정 및 동고시 제9호('92. 4. 3)로, 지적 승인된 동작구 대방동 350-5 일대 수도용지에 대방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계획 사업(수도)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문 내용과 같이 시보와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 하였으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 및 도면을 공람토록 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안 1부.

2. 위치 및 지적현황도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117

(제4안)

수신  강남구 논현동 254 대한주택공사

제목 : 갑 은 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5호('92.3.19)로 도시계획(수도) 시설결정 및 동 고시 제9호('92.4.3)로 지적 승인된 동작구 350-5 일대에 대방배수지 건설 공사의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었기 알려드립니다.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 첨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390-7378)
및 동작구청 건설관리과(810-1400)

다. 공람공고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첨부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5안)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시민과장

제목 : 관인날인 의뢰



1.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대방배수지 건설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수도)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코자 관인 날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시행문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 고 안

도시계획(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서류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85호('92.3.19)로 도시계획(수도) 시설결정 및 동 고시 제9호(1992.4.3)로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350-5번지 일대 수도 용지에 대방배수지 건설 공사의 도시계획(수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390-7378)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건설관리과(810-140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1992. 11. 1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 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350-5번지 일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수도)사업, 대방배수지 건설공사
-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25,099.30㎡(배수지 6만톤)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 부터 ~ 1994.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명세 : 별첨
-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390-7378)로 문의 바람.

사용토는수용알로거의포서

=====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대방동 15-47	대	22	서울특별시	
2	대방동 15-45	"	4,892	"	
3	대방동 15-50	도	26	"	
4	대방동 20-118	대	1,833	강남구 논현동 254	대안주택공사
5	대방동 20-119	"	75	"	"
6	대방동 23-205	"	7,015	서울특별시	
7	대방동 350-5	"	11,236.30	"	1972.11.1. 류부장
	7 필지		25,099.30		